

해방공탁금 회수 절차

1. (부동산)가압류(카단 사건)

2. 해방공탁

-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,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
- 제3자 공탁 불허, 일부 공탁 금지

3. 가압류집행취소(카기사건, 이00 사건) 1)

-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).

4. 해방공탁금 회수(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한)

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**패소**하면 2) 해방공탁자(가압류채무자)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 3) (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)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이후 가압류결정이 취소가 되면(카단사건), 해방공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

1) 이00 사건: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기000 가압류집행취소 참조

2) 이에 반하여,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공탁소에 가지는 (해방)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(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)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 할 수가 있다(1995마252 결정).

3) 권00 사건;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0000 가압류취소 참조,

1. 가압류결정취소결정 정본
2. 가압류결정취소결정 송달증명원
3. 공탁서원본(사본) 4)
4. 해방공탁자 인감증명서 5)
5. 주민등록표초본(공탁자주소변동사항 확인)
6. 신분증(직접 회수시)
7. 공탁금회수청구서 2부(담보취소결정은 따로 받을 필요 없음)

4-1. 해방공탁금 회수(가압류권자의 집행해제(취하)에 의한)

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를 하고,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, 해방공탁자(가압류채무자)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.

1. 가압류해제(취하)증명원 6)
2. 공탁서원본(사본)
3. 해방공탁자 인감증명서(위임시) 7)
4. 해방공탁자 인감도장날인(위임시)
5. 주민등록표초본(공탁자주소변동사항 확인)
6. 해방공탁자 신분증(직접회수시)
7. 공탁금 회수청구서 2부

- 4)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(다만,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)
- 5) 공탁물을 출급·회수청구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·회수청구서에 인감을 날인하고,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(공탁규칙 제37조),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·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,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,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(공탁규칙 제37조).
- 6)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하접수와 동시에 발급가능,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해제 발송 송달확인 후 수일 내에 발급함, 가압류결정이 난 상태에서는 취하와 해제는 동일한 말임, 채권가압류해제는 우표 6040원 첨부, 가압류해제(취하)증명원은 가압류해제(취하) 접수증명원이 아님
- 7) 위임인이 공탁금을 출급·회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, 그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대리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만 첨부하면 된다,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(공탁규칙 제21조 제2항).